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주민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주민 소통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확대하기 위하여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안 제8조제1항) 규정과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

○ 개정-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 홍보**”로 변경

#### 나. (안 제8조제1항제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 신설-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다. (안 제8조의2) 주민 참여 유도·확대를 위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 신설-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홍보전산과장,  
전화 : 3396-4972, FAX : 3396-9022, E-mail : somiki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정홍보**”를 “**구정과 지역 홍보**”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p> <p>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u>구정홍보</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u>&lt;신 설&gt;</u></p> <p>② · ③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8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 ①</p> <p>-----</p> <p>----- <u>구정과 지</u></p> <p><u>역 홍보</u>-----</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실비보상 등)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개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p>